

[] 국내항공운송사업
[] 국제항공운송사업] 변경면허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발급일	처리기간 25일
------	------	-----	----------

신청인	상호(법인명)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주소(소재지)		전화번호
	팩스번호		

신청내용	면허증 번호
	현 사업범위 [<input type="checkbox"/>] 국내(여객) [<input type="checkbox"/>] 국내(화물) [<input type="checkbox"/>] 국제(여객) [<input type="checkbox"/>] 국제(화물)
	자본금
	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[<input type="checkbox"/>] 상호 [<input type="checkbox"/>] 대표자의 명의 [<input type="checkbox"/>] 주소(소재지) [<input type="checkbox"/>] 사업범위
	운항개시에정일 (사업범위 변경 시에 해당합니다)

「항공사업법」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7항에 따라

[] 국내항공운송사업 [] 국제항공운송사업] 변경면허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「항공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1조

유의사항

- 면허를 받으신 후 사업개시 전까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증명 또는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 - 가. 운항증명(「항공안전법」 제103조제1항)
 - 나.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인가(「항공안전법」 제93조)
 - 다.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및 신고(「항공사업법」 제14조, 국제항공운송사업만 해당합니다)
- 면허신청서에 적은 운항개시에정일까지 사업을 개시하여야 합니다.
-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(전화번호 044-201-4228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